

## ◆ 소방수원 확보의 건

질의)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특수장소가 있는 경우 소화수량 확보는?

답변) 모든 소화설비의 수원은 전용수조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원을 겸용하는 경우 각각 해당 유효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 소화설비 설치장소가 방화구획된 경우에는 저수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 ◆ 폭발의 정의

질의) 어떤 것을 폭발사고라 하는지? 가령, 포도주가 터진 것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 폭발의 정의는 해당 분야마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 사용하는 폭발의 정의는 “물체가 급격한 연소, 분해 등 화학 반응에 의하여 급격하게 또한 아주 현저하게 그 체적을 증대하고, 그 급격한 압력의 증가에 의한 폭음, 폭풍 또는 파열작용을 수반하는 현상(출전: 보험사전, 한국보험학회)”을 말한다.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는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파열 또는 폭발 전후의 화재로 인한 화재손해만 보상된다.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폭발손해담보특별약관부 계약에 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종 보험분야에서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를 담보하는 추세이다. 질문한 포도주병의 터짐은 급격한 반응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받기 힘들 것이다. 다만, 특별히 포도주를 담보로 손해보험을 들면 된다. 일반적인 경우 손해정도의 판기름은 손해사정인이라는 전문인에 의해 평가된다.

## ◆ 방화셔터의 설치 장소

질의) 건축법 또는 소방법상에 명시된 방화셔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답변)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개구부면 어느 곳이나 설치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주위, 방화문 설치가 곤란한 장소,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창문, 개방된 공간에 건추기법의 면적별, 층별, 용도별 구획이 필요한 곳 등에 설치한다. 즉, 법적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방화구획 경계선 모두에 설치할 수 있다.

## ◆ 소화가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질의)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또는 NAFS -Ⅲ 등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에 사용되는 가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사례는?

답변) 소화가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 이산화탄소

- 2% 불쾌감, 3% 호흡수 증가, 4% 점막 자극 및 혈압 상승, 8% 호흡곤란, 9% 구토 또는 실신, 10% 1분 이내 실신, 방치시 사망

- 할론 1301

- 7% 이하에 15분간 : 거의 영향 없음
- 7~10%에 1분 : 현기증, 경미한 신경장애
- 10% 초과 : 의식을 잃지는 않지만 신경장애 발생

- NAFS-Ⅲ

- 10% 이하 : 심장에 독성이 미치지 않음
- 10% 초과 : 심장에 독성이 미침

이나, 가스계소화설비의 방출시 경보신호가 발령되기 때문인지 현재까지는 소화가스에 의한 피해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